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. 8. 9 선고 2022가단1118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래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제정석

변 론 종 결 2023. 5. 31.

판 결 선 고 2023. 8. 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1. 2. 15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1. 2. 15. 접수 제17757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7. 4. 17. C에게 변제기 2020. 4. 17.로, 지연이자율 11%로 각 정하여 2,000만 원을 대여하였다.

나. 피고는 C와 1995. 5. 29. 혼인하였고, 2022. 1. 21. 협의이혼하였다. 피고와 C는 2009. 9. 10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“이 사건 부동산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그 후 C는 2021. 2. 15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. 2. 15. 증여(이하 “이 사건 법률행위”라고 한다)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갑 1호증, 을 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.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C는 연장된 변제기일인 2022. 4. 17.까지 위 차용금 2,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았다. C는 2021. 2. 15.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와 C의 혼인생활은 2019. 11.경부터 파탄상태였다. 피고는 C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고, 재산분할로서 상당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 피고는 이 사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이 사건 법률행위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성립하고 있었고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(1)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).

(2) 갑 1, 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D, 남양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,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C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점, C는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외에도 합계 6,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, E조합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 2억 3,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, C는 이 사건 법률행위 이후 2022년 말경까지 추가로 합계 약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고, 특히 이 사건 법률행위 직후인 2021. 3.경부터 2021. 5.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아던 점, C는 2021. 12. 31. 253,027,040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으나 같은 날 134,304,755원을 대출금 변제로 사용하였고, 피고에게 4,500만 원, F, G 등에게 각 3,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퇴직금 수령한 당일 C의 계좌 잔액은 0원으로 되었던 점,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C의 퇴직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위 퇴직금청구채권은 C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, C는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그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(3) 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C와 피고는 2022. 1. 21.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 사건 법률행위는 그로부터 약 11개월 전에 있었던 점, C는 2019. 11.경 이후는 물론 피고와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급여나 퇴직금 중 일부를 송금하기도 하고 다수의 금전거래를 한 점(갑 4호증)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법률행위가 재산분할약정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가

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다.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 사건 부동산은 C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피고는 C로부터 그 소유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점, C는 이 사건 법률행위 전후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건의 대출을 받았던 점, C와 피고는 부부이고 C는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, 이 사건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법률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원묵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. (1동의 건물의 표시)

경기도 남양주시 , , , 동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경기도 남양주시 , 대 293713㎡2. 경기도 남양주시 , 대 449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6층 호, 철근콘크리트벽식조 134.878㎡

(대지권의 표시)

1, 2 소유권대지권, 294162분의 50.97

- 이상 -

